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5378
등록일자	2016.2.3.
결재일자	2016.2.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환경국장	
김동일	조성률	김화전	전결 02/03 이우룡	
협 조				

2016년 중구자치장애인편의시설자원센터 운영계획



복지환경국
사회복지과

2016년 중구지체장애이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

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촉진과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‘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’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편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

I 운영개요

지원근거

- 장애인복지법 제23조(편의시설)
- 장애인,노인,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(의무)
- 서울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계획(장애인자립지원과-1989호-'16.2.1)

사업기간 : 2016. 1월 ~ 12월

운영주체 :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 중구지회

-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('05년 설립) : 3명
 - ▶ 센터장 1명(무보수), 기술요원(건축전문가) 1명, 일반요원 1명
- ※ 시민촉진단 : 5명(행정도우미-편의시설 인식개선 홍보, 모니터링 등)

총 사업비 : 91,076천원(시비 : 45,538천원, 구비 : 45,538천원)

주요 사업내용

-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적 지원
 - 신·개축 건축물 건축협약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
-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및 홍보·안내
-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 추진
-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홍보·유도
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·계도 실시

II 2015년 추진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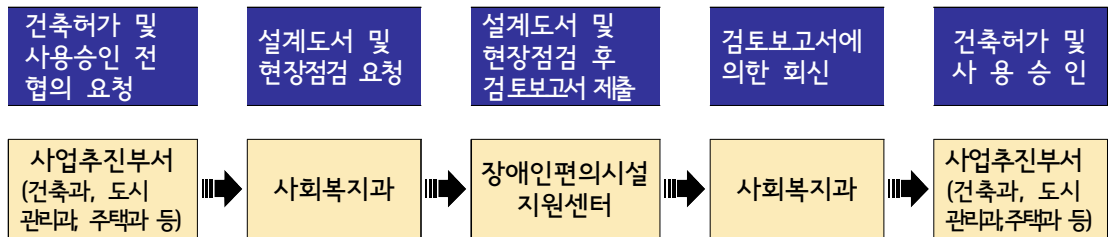
-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관리 및 실적
 - 시민촉진단(모니터링) 5명 운영 및 교육, 근무상황, 점검업무관리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1,175건
 -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219건

□ 건축협의를 등 편의시설 지원사업 실적 (단위 : 건)

계	건축허가	사용승인	민원상담	홍보	실태조사
884	416	177	91	110	90

III 세부 운영 계획

-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업무 강화
 - 신·개축 건축물 건축협약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술지원
 - 사전협약 대상시설 : 공원,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, 통신시설
 - 사전협약 시기 : 건축허가(설계도서) 및 사용승인(현장점검 병행) 협약 시
 - 협약절차 : 편의시설 설치계획서·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이행여부 확인



-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운영 관리 철저
 -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요원의 점검능력 강화교육 실시 등 사업추진 철저
 - 다양한 모니터링 조사업무 능력 제고
-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 확산을 위한 업무지원
 -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약시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토록 홍보·유도
 - 서울형 무장애 건물 인증 대상시설 사전 예비조사 실시

-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
 -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촉진을 위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 배부
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실시

-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
 -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(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)와 업무협약 체결
 -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 및 홍보 실적 관리
 - 건축협의를 통한 설치율 향상
 - 편의시설지원센터 추진 업무전반 지도감독 실시

- 2016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추진
 - 조사시기 : 2016. 3 ~ 11월
 - 대상건물 : 약 750 여개 [편의증진법('98.4.11)이후 건축(신축등) 행위가 있었던 건물]
 - *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, 노유자시설(장애인등), 종합병원 등 공공시설, 민간시설(백화점 등) 포함
 - 세부추진 : 보건복지부 세부추진계획 확정 통보 후

IV 행정 사항

-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협약체결 운영
 - 협약기간 : 2016. 1. 1 ~ 2016. 12. 31.
 - ※ 서울시의 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1년 단위로 협약체결
 - 협약내용 : 서울시의 표준 협약서(안)에 의거 협약체결 운영(붙임 1)

- 계획서 승인 : 중구지회에서 제출한 2016년도 사업계획서 승인(붙임 2)

- 보조금 등 회계 관리
 -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행
 - 구는 전반적인 사업추진 지도·감독 실시
 -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·회계 규칙을 준용
 -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

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
※ 서울시의 『2016년도 직원봉급표 및 수당표』 기준에 의거 인건비 집행

사업비 교부절차

- 지원센터 ⇒ 구 : 분기별 전분기 정산·실적 보고, 교부신청
- 구 ⇔ 시 : (구)분기별 정산·실적보고, 교부신청/ (시)분기별 예산교부
- 구 ⇒ 지원센터 : 분기별 예산교부

- 붙임 : 1.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협약서(안) 1부
2.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 편의시설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. 끝.